

람사협약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대응

주기재 도윤호
부산대학교 생물학과

1. 들어가면서

습지란 사전적으로 물기가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데, 생물의 성장기를 포함한 연중 또는 상당기간 동안 물이 지표면에 덮여 있거나 지표 인근에 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또한 습지는 영구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습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한 식물이 서식하며,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 사이의 전이지대로 독특한 동적 생태계이어서 습지에 의지하는 생물상도 역시 독특하고 생산성과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습지는 오랜 기간 동안 농업적 이용에 많은 관심이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유기질을 함유하고 있는 습지를 농지로 전환하거나 개간되어 이용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습지의 홍수조절, 수질정화, 생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중요하며, 보전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습지를 보호하거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한 논의와 방법이 연구되었고, “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목록을 구축하고 이들 습지를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해안 습지인 갯벌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습지의 훼손이나 소멸을 막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습지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대암산 용늪과 우포늪 등이 학계나 매스컴을 통해 “꼭제적으로 보전(conservation)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습지를 보호(protection)해야 한다는 의식이 이루어졌다¹⁾.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혹은 보전가치를 지닌 습지를 판단할 때 람사협약에 등록되었느냐 혹은 국내 습지보전법에 의해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가가

1) 보전(conservation)과 보존(preservation), 보호(protection) 등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보전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 보존은 “변화 없이 그대로 지켜 유지하는 것”, 보호는 “법적 제재를 포함하여 자연을 지키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된다. 이는 란사협약의 정식명칭이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²⁾이라는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가 이후에 란사협약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란사협약 등록습지는 곧 보전지역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란사협약에 대한 조금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습지를 둘러싼 환경분쟁이 일어나고, 란사협약이 추구하는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Wise Use)³⁾을 방해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 혹은 환경단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차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제10차 란사 당사국회의(COP10)가 2008년 우리나라 경남에서 개최되는 이 시점에서 란사협약을 바르게 이해하여 란사협약이 추구하는 습지정책 혹은 실행방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습지관련 정책 더 넓게는 환경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이나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란사협약에서 논의되는 주요 의제의 내용과 현재 우리나라의 습지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2. 란사협약이란?

란사협약은 1960년 유럽에서 대규모 습지소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MAR프로그램이 설치되었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진행되었다. 이후 IUCN과 Wetlands International, BirdLife International과 같은 국제조직들의 참여와 국제 및 기술회의를 통하여 협약의 기본이 되는 문서가 완성되었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란사에서 중 자체보다는 습지 서식처의 보전을 주된 목표로 삼고 18개국 대표단이 문서에 서명하면서 비준되었다. 협약은 1975년 12월 UNESCO의 접수로 국제협약의 효력이 발생되었고 3년마다 협약에 가입한 나

2) 란사협약의 정식영문명칭은 "The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s"이다.

3) 란사협약의 습지의 현명한 이용개념은 "해당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이 유지되는 틀 속에서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습지에서의 지속가능한 활동"이다.

라들이 협약의 이행에 관해 하는 당사국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53개국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람사등록습지는 1,626개소에 이른다.

당사국회의(COP)는 람사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의결하는 것으로 1) 전체 회원국에 의한 협약 및 부속서를 개정하고, 2) 협약의 이행을 위한 권고문, 결의문을 채택한다. 모든 당사국회의 관련자료들은 과학기술검토포널(STRP)과 상임위원회의⁴⁾ 검토를 거쳐 총회에서 의제가 상정되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i) 당사국회의는 의제 및 의사진행 규칙을 채택하여 ii) 각종 위원회를 지정하고 iii) 옵저버 승인 및 입회 뒤 iv) 협약의 전략계획 및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v) 또한 소위원회⁵⁾를 지정 하여 지역회의 및 기술 세션 보고와 논의가 진행되며 모든 위원회의의 보고 결과를 참조하여 vi) 결의문 및 권고문을 채택한다. 그 외에도 vii) 차기 상임위원회 당사국을 선출하고 viii) 당사국 총회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당사국회의가 마치게 된다.

또한 람사협약은 다른 관련협약 혹은 국제조직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람사 정신의 이행에 있어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람사 사무국은 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국제 협약 및 기구들과 긴밀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야생동물 중 이동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CMS), 세계유산협약, 사막화방지협약(CCD), 기후변화협약(UNFCCC) 등과 협력각서 교환하고 아프리카-유라시아 물새이동, 세계유산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의 보전, 생물권 보호구역이면서 람사습지의 경우 공동홈페이지 운영 등 많은 사업을 협력하고 있다.

람사협약은 지원기관⁶⁾의 기금으로 유지되는데 협약사무국은 이들 지원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으며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습지관련 개발과정에도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람사사무국의 선임정책자문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습지보전을 위한 기금을 체계적으로 모금하고 있으며 Conservation Finance Alliance(CFA)를 창설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람사협약은 지원기관의 기금 외에도 람사 소규모 지원기금

4) 상임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며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를 대비하여 협약의 이행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람사가 정한 대륙별 가입국수에 비례하여 위원을 선출한다.

5) 자격심사위원회, 전략계획 위원회, 재정예산 위원회 등

6) 세계은행(World Bank),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DAC/OECD(OECD 개발지원위원회),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Ramsar Small Grants Fund)⁷⁾나 미래를 위한 습지 기금(Wetland for the Future Fund)⁸⁾ 등의 기금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람사협약 당사국회의(COP) 주요논의사항

람사협약의 권고문과 결의문은 람사협약의 흐름과 습지관련 혹은 환경관련 주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⁹⁾. 현재까지 이란(1971)과 독일(1974)에서 개최된 회의와 COP1에서 COP9이 진행되면서 112개의 권고문과 142개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권고문은 람사협약에서 추구하는 사업 혹은 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위해 당사국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결의문은 지난 COP 이후 혹은 사업진행 이후 얻어진 결과나 진행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문과 결의문이 중복되거나 반복적인 내용이 많아 당사국회의의 효율성 문제가 제시되면서 COP8부터는 결의문만 채택하게 되었다.

[표 1] 람사협약 당사국회의 주요논의사항

7) 람사 소규모 지원 기금은 최대 스위스 프랑 40,000을 넘지 않는 소액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14개국과 WWF 등 3개 단체가 기부하고 있다.

8) 미래를 위한 습지기금은 람사사무국, 미국 국무성,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이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관한 훈련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9) 권고문과 결의문은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람사홈페이지(www.ramsa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최년도		도시(국가)	주요 내용
제1차	1980	칼거리(이탈리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기준 채택
제2차	1984	그로닌겐(네덜란드)	당사국회의 실행 방안 작성
제3차	1987	레지나(캐나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 실용지침 채택 상임위원회 신설
제4차	1990	몬트로(스위스)	람사 사무국설치 일원화(스위스 그랜드) 람사등록습지 D/B화
제5차	1993	쿠시로(일본)	쿠시로 성명서 채택 과학기술 검토위원회(STRP) 설치
제6차	1996	브리즈베인(호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기준에 어류 채택 람사와 물에 관한 결의문 채택
제7차	1999	산 호세(코스타리카)	람사상 수상
제8차	2002	발렌시아(스페인)	통합적 유역관리를 위한 습지 보호 지침 채택
제9차	2005	캄파라(우간다)	CEPA 프로그램 지침 개발
제10차	2008	창원(대한민국)	

당사국회의의 논의사항을 고려해볼 때 람사협약은 초기(COP1~COP4), 도약기(COP4~COP7), 발전기(COP7~COP9)로 구분할 수 있다. 람사협약 당사국회의는 COP1 이후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듯 보이나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생태적 특성유지를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초기 당사국회의들에서는 사무국의 운영, 상임위원회설치, 재정과 예산, 협약 공용어 등을 다루어 왔으며 협약 참여 당사국 및 등록습지수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COP3에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COP4에서 과학기술위원회(STRP)가 설치됨에 따라 협약의 의사결정 및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전문가의 조직적인 참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STRP의 경우 습지의 보존, 복원, 람사습지기준, 조류독감, 습지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지침을 작성하여 당사국의 습지행정집행을 도우고 있다.

COP6의 이후 당사국회의의 국제의제는 인식증진 프로그램(CEPA)¹⁰⁾, 지역

10) 람사협약의 CEPA(Communication, Education Public Awareness) 프로그램의 목적은 1) 협약을 구성

협력 이니셔티브, 생물관련 국제 협약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루는 의제가 채택되는 등 매우 다양해지게 되었다. COP6에서는 어류가 램사등록습지 기준으로 채택되는 등 습지에서의 철새 보존 단계를 뛰어넘어 생태계보전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COP8과 COP9에 유역관리 속에서 습지, 접경지역의 습지, 지역이니셔티브(안데스, 히말라야 등), 습지와 문화, 조류 독감, 등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었다. 습지의 생태적 특성(ecological character)과 현명한 이용(wise use), 습지 복원, 외래침입종 등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오던 주요의제들도 새로이 다듬어져 채택되어 오고 있다.

논의주제별로 살펴보면 습지기준을 선정하고 램사등록습지의 목록을 작성하여 D/B화하기 위한 논의가 가장 많은데 COP6부터는 램사등록습지의 기준에 철새뿐만 아니라 어류도 포함되었다. COP4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몬트로목록¹¹⁾과 몬트로목록에 기재된 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심도있게 다뤄져 왔는데 인도의 킬리카호수는 몬트로목록에 기재되었다가 복원사업의 노력으로 인해 최근에는 상당히 자연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CEPA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되었는데 교육프로그램개발과 후진국 지원사업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CEPA활동과 연관된 세계습지의 날 행사¹²⁾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이니셔티브를 통한 습지보전에 노력하고 있고 자연재해와 습지, 조류 독감, 습지와 빈곤, 어자원 보전 등 실질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다양한 단계별로 습지관련 정보교류, 교육, 대중 인식(CEPA) 과정에서 효율성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2) 습지관련 CEPA 활동의 국가단위 및 지역단위 실행에 있어서 지원체계와 방법을 지원하고, 3)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습지의 현명한 이용정신을 심도록 노력하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1) 몬트로 목록이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람사 목록)에 올라있는 습지 중 개발, 오염, 기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생태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화하고 있거나,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습지의 목록”이다.

12) 1997년 이후 매년 2월 2일 램사협약이 발족된 것을 기념하고 습지의 가치와 혜택에 대한 대중 인식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림전시회, 특별방송,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COP 1	COP 2	COP 3	COP 4	COP 5	COP 6	COP 7	COP 8	COP 9
습지기준		습지기준	습지기준	습지기준	습지기준(어류)	습지기준		
습지목록			습지목록		습지목록	습지목록	습지목록	
	국가 보고서		국가 보고서					
		생태특성 변화		생태특성 변화				현명한 이용
		현명한 이용		현명한 이용				국제 협력
		국제 협력		국제 협력	국제 협력			
		몬트로 목록		몬트로 목록	몬트로 목록			
		습지기금		습지기금	습지기금	습지기금(미국)	습지기금(SGF)	습지기금
		습지복원		습지복원	습지복원	습지복원	습지복원	
		CEPA		CEPA	CEPA	CEPA	CEPA	CEPA
				STRP	STRP	STRP	STRP	STRP
				지중해 습지	지중해 습지			
				도서국가 습지	도서국가 습지			
				이탄 습지	이탄 습지	이탄 습지	이탄 습지	
					외래 침입종	외래 침입종		
					람사습지 경계			람사습지 경계
						지역 이니셔티브	지역 이니셔티브	
						전략계획 03-08	전략계획 03-08	
						습지와 문화	습지와 문화	
상임 위원회 설치			국가 위원회	국가 정책	강유역 관리		RIS	자연재해 습지
철새 이동로 연구			NGO역할	권고문과 결의문 통합	조간대 습지		농업과 습지	AWS
				독성물질			당사국회의 효율성	IOPs
				동아시아-호주이동로			ICZM	습지와 빈곤
				습지의 경제적 가치			중서부아시아지역센터	조류 독감
				연안습지와 산호초			기후변화와 습지	어자원 보존
				주민참여			맹그로브 습지	
				환경영향평가			산지 습지	
							물새 연구	

<그림 1> 당사국회의 주요의제 변화

4. 람사전략계획 (Ramsar Strategic Plan 1997-2002, 2003- 2008)¹³⁾

람사전략계획은 람사협약이 일정기간동안 진행할 사업들과 주요 목표를 제시하여 당사국들이 람사협약의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들이다. 람사전략계획의 이행이 곧 람사협약의 이행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더 넓게는 국제사회에서 환경정책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람사전략계획은 호주의 브리즈베인에서 열린 COP6(1996)에서 첫 번째 전략계획 1997-2002”가 채택되었으며 2002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된 COP8에서 채택된 전략계획 2003-2008”은 첫 번째 전략계획의 주요 방향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빈곤퇴치와 식량과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 기후변화, 무역장벽의 해소와 무역의 국제화, 민간부분의 증대, 국제개발은행 및 국제 개발기관의 증가하는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전략계획 2003-2008은 1) 습지의 현명한 이용, 2)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람사목록), 3) 국제협력 강화를 3개의 근간(three pillars)으로 채택하여 습지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고 있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빈곤감소, 물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법과 행동을 통하여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습지, 적절한 수자원 배분, 강유역관리, 국가 습지 정책 및 계획, 습지에 영향을 주는 법적, 재정적 기구에 대한 검토 및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습지의 목록화 및 평가, 지속가능한 개발프로그램에 습지의 포함, 지역민과 원주민에 의한 습지의 문화적 가치유지 및 습지관리에 있어서 주민 참여와 습지에 관한 정보교류, 교육, 인식증진방안(CEPA) 촉진, 민간 부분의 참여 증진, 다른 다자간 환경 협약과 람사협약의 조화로운 실행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 작성은 람사 목록에 등재된 습지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지구 생태계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습지 발굴, 지정, 관리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13) 람사전략계획은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람사홈페이지(www.ramsa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전략계획 (2003 ~ 2008)의 세부 목표

주요 목표			
1	습지목록화 및 평가	12	접경지의 수자원, 습지 및 주요 습지종의 관리
2	습지 정책 및 입법화	13	타 연구, 타 기관과의 협력
3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개념을 지속한 가능한 개발에 포함	14	전문성과 정보의 공유
4	습지의 복원과 기능 회복	15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존에 대한 재정
5	외래종의 확산	16	람사협약의 재정
6	지역민, 원주민 및 습지의 문화적 가치	17	습지협약의 기관별 연계
7	민간 부분의 습지 보존 참여	18	당사국의 기관별 역량
8	습지 보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9	국제 파트너조직 및 기타 단체와의 협력
9	습지 관한 정보 교류, 교육 및 인식증진	20	교육과 훈련
10	람사등록습지 지정	21	협약의 회원국 관리
11	람사등록습지의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국제협력 강화는 습지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또한 접경 습지 지역의 수자원과 습지의 관리 및 두 나라 이상의 습지에 서식하는 종의 관리를 위하여 타 국제 협약, 국제 조직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전략 계획 일반 목표와 두 가지의 추가적인 목표는 총 21가지의 실행 목표로 세분화 할 수 있다.

5. 람사협약에 대한 국내 이행과 대응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0년간 습지보전 및 관리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습지보전을 위해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야생조수 치료센터, 보호지역 지정, 생물다양성협약,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문자 센터, 생태공원 조성 등 매우 괄목할 만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여러 사업들이 국제적인 흐름에 따르기 보다는 단위사업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 3] 람사협약의 권고 사항과 관련사업

항 목	사업시행	사업대상	추진주체
전국습지 목록화	2000 년 이후	전국적인 습지 분포	환경부
습지 모니터링	2002 년 이후	전국	환경부, 해양수산부
생태공원	2001 년 이후	울산, 우포, 부산	환경부
방문자 센터	2003 년 이후	순천, 낙동강 하구, 주남저수지	문화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표 4] 국제적 수준의 람사협약의 이행과 추진방향

이행목표	추진방향	추진주체
람사 등록습지 확대	전국 30개소 이상	환경부
CEPA의 이행	민간단체 지원, 지자체 지원	환경부, 민간,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관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환경부
람사 정신의 확산	습지 인식 증진	환경부, 민간, 해양수산부
람사 및 생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속적인 국제회의 동향 파악 전문적인 대처	환경부
생물 및 다양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생물관련 협약의 지속적 관리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국가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성실한 작성 (full version)	환경부
개발도상국 지원	아시아의 습지 보전사업 지원	환경부, 민간단체
동아시아-호주 협력	network 가입확대 및 국제협력	환경부
한국주도의	한국의 환경관리 수준 과시 및	환경부

이니셔티브	위상제고	
국제기구 인턴쉽	한국인 전문가의 세계화	환경부, 민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자매결연)	동일 철새 이동로상의 국가 간 협력, 전문인력 교류	환경부, 민간
STRP 및 생물관련 국제기구 참여	인턴쉽, 정규직 참여를 통한 환경관련 수준 및 국력과시 한국의 습지관련 단체 및	환경부
WLI 참여	센터가입, 람사정신(CEPA)의 확산	환경부, 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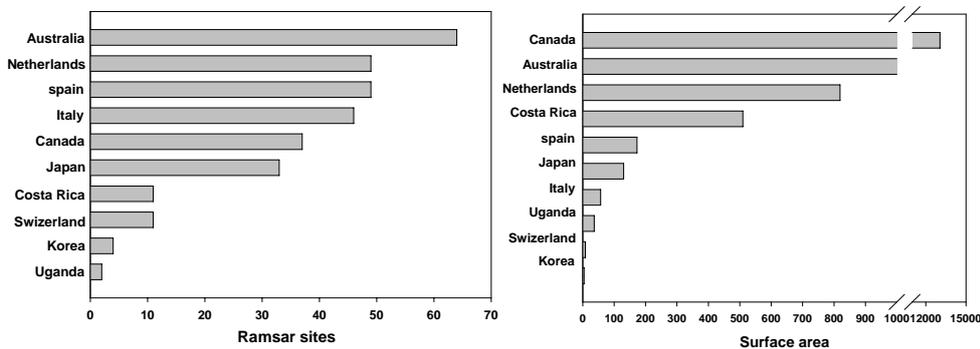
따라서 2008년 람사총회유치를 계기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습지목록화나 습지 모니터링은 전국규모에서 잘 진행되어져 왔으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공원이나 방문자센터 설립 등은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습지관련 대부분의 사업들은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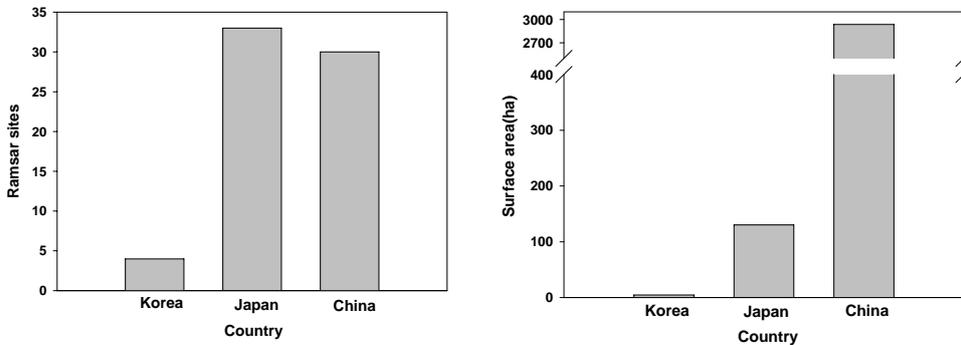
람사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람사등록습지를 확대하고, CEPA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국제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내 람사등록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당사국 총회 개최국들의 람사등록습지 수와 면적을 살펴보면, 제 6회 람사 총회 개최국이었던 호주는 64개의 람사 습지를 등록시켰으며 총 면적이 730만 ha에 이른다. 람사 지구의 등록 수로 보면 영국(164개소), 멕시코(65개소), 호주(64개소), 스웨덴(51개소), 네덜란드, 핀란드, 스페인(49개소) 순이며, 람사 등록 습지의 면적으로 보면 캐나다(1300만 ha), 러시아(1000만 ha), 호주(730여만 ha)등의 순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9차 총회 이후 람사 등록습지를 확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5년 우간다 총회 전보다 10개소의 람사 습지를 늘렸으며, 중국은 2006년 3월 현재 30개소의 등록습지가 있다. 등록습지의 면적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4개소 4,519ha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 최근에 장도 습지와 순천만을 등록하였지만, 면적 또한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한내에 현재 람사등록이 가능한 습지를 찾고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특히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습지에 대한 보전의식이 높은 지역의 습지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¹⁴⁾. 우리나라의 습지 중 람사등록이 가능한 습지를 람사습지의 물새기준에 의거하여 확인해보면 이미 람사에 등록된 습지를 제외하고 낙동강하구, 광양만, 금강하구, 천수만 등 41개소에 이른다. 또한 람사협약은 상대적으로 적게 등록된 습지 중 중요한 습지(잘피, 산호초)의 등록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거제도 등에 산호초가 일부 있으며, 연안에는 잘피가 잘 발달된 곳이 많다.



<그림 2> 역대 당사국회의 개최국 람사등록습지수(왼쪽)와 면적(우)(2005년 기준)



<그림 3> 한국, 중국, 일본 람사등록습지수(왼쪽)와 면적(우)(2005년 기준)

14) 구미 해평습지의 경우 두루미가 전세계 개체수의 20~70%가 도래하고 인근에 매학정이라는 두루미를 주제로한 문화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환경단체, 지역민의 습지보전의식이 높아 큰 무리없이 람사에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EPA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CEPA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지원하여 습지인식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해야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람사 및 생물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와 더불어 생물 및 다양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보고서 작성과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풀을 조직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해야하는데 많은 생물 및 환경관련 협약(예: CMS)에 가입하고 생물 및 환경관련 협약 동향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많은 생물관련 협약들의 이행조건들이 중복되어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람사협약 국제파트너기관(IOPs)과 협력을 도모하여 국내에 람사협약의 공식파트너 기관의 국내 사무소를 개소하고 필요시 공동사무소를 개설 및 지원하여야 한다. 많은 습지 및 환경정책 선진국들은 기금을 마련하여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장기적으로 진행시킬 필요도 있다.

6. 마치며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습지관련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협약의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이다. 역대회의 개최국은 회의개최를 계기로 자국의 습지 보존 정책, 모니터링,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을 자국의 습지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로 삼아왔다. 일반적으로 당사국회의때 개최국은 람사등록습지의 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습지 관련 지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중반이후 습지 분야는 물론 환경전반에 걸친 국민적 관심과 비정부기구의 활발한 노력으로 환경분야가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 습지분야의 경우에도 습지법 제정, 1단계 습지 모니터링 실시, 습지보호구역 지

정 등 괄목한 수준의 성과를 쌓고 있으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국력에 걸 맞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지 못했었다. 이번 제10차 당사 국회의는 우리나라의 습지정책을 정리하고 당사국들은 물론 협약관련 국제협력 단체(IOPs)들에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습지보전 및 관리에 대한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특히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로상의 국가들 및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와 습지 분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